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광성 의원입니다.

□ 본 의원 외 1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  
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3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보조금 지원 대상을 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보조금 지원 대상을 규정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